

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7월 6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보건관리과장 종석목)

□ 폐지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·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·징수 절차를 「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」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
-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(대통령령 제21228호, 2008. 12. 31. 공포, 2009. 1. 1. 시행)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(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, 별표 5)이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“동 조례 폐지”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조례로 정한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태는 어떠한지?	○ 대부분 표준안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,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음. (이상 보건관리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·

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431호
의결 년월일	2009. 7. 10. (제153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6. 2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폐지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·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·징수 절차를 「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」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
-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(대통령령 제21228호, 2008. 12. 31. 공포, 2009. 1. 1. 시행)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(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, 별표 5)이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“동 조례 폐지”

□ 첨 부: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

폐지조례안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현행 조례)

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

[1997. 01. 15 조례 제1475호]

[1998. 04. 01 조례 제1572호]

[1999. 04. 30 조례 제1653호]

[2003. 11. 06 조례 제1991호]

[2005. 02. 04 조례 제2070호]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, 제35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(이하 "과태료"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제3조 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2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
3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
4.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5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자

제4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4조 및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 (의견진술)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 (삭제)

제7조 (과태료 처분통지등)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한다.

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.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전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③ 삭제

제8조 (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)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.

제9조 (삭제)

제10조 (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)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

식에 의하여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삭제)

제12조 (준용) 과태료 부과·징수절차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1997. 1. 15 조례 제1475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제3조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1998. 4. 1 조례 제157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1999. 4. 30 조례 제1653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3조제2호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제3조 및 제4조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<2003. 11. 6 조례 제1991호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(2005.02.04 조례 제207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 <개정 2005. 02. 04>

과태료 부과기준(제4조관련)

위 반 내 용	근 거	부과금액(단위:만원)		
		1차	2차	3차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국 민 건 강 증 진 법 제34조제1항제1호	70	200	300
2.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	국 민 건 강 증 진 법 제34조제1항제2호	70	200	300
3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국 민 건 강 증 진 법 제34조제2항제1호	50	150	200
4.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	국 민 건 강 증 진 법 제34조제2항제2호	50	150	200
5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국 민 건 강 증 진 법 제34조제2항제3호	50	150	200

1.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2.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
(별지 제3호서식)

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

문서번호 :		시행년월일 :	
수 신 :			
제 목 : 과태료부과징수 결정통지서			
귀하께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기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부천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통지 제 호			
과태료 처분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전화번호
위 반 장 소	시설(업소)명		업 종
	소 재 지		
위 반 사 항	위 반 법 조 항		위반내용
	산출근거		
과태료 금액			
※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
첨 부 :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.			
년 월 일			
부 천 시 장 (인)			

(별지 제4호서식)

(세 외)
과태료납부통지서

제 회 회계연도 년도		
세입과목		
납부의무자	성명	
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납부기한	년 월 일	
<p>위의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납부장소 : 부천시금고(농협)</p> <p>년 월 일</p> <p>부 천 시 장 (인)</p>		

(세 외)
과태료납부서
(수납은행보관용)

제 회 회계연도 년도		
세입과목		
납부의무자	성명	
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납부기한	년 월 일	
<p>위의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납부장소 : 부천시금고(농협)</p> <p>년 월 일</p> <p>부 천 시 장 (인)</p>		

(세 외)
영 수 필 통 지 서
(부천시통보용)

제 회 회계연도 년도		
세입과목		
납부의무자	성명	
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납 부 기 한	년 월 일	
<p>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부천시금고 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천 시 장 (인)</p>		
수납날짜도장		

(세 외)
영 수 증
(납부자용)

제 회 회계연도 년도		
세입과목		
납부의무자	성명	
	주소	
과태료금액	원	
납 부 기 한	년 월 일	
<p>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부천시금고(인)</p>		
수납날짜도장		취급자인

(별지 제5호서식)

과태료납부독촉장				
제 호				
납부의무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시설(업소)명	
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				
위 반 사 항				
과태료금액			당초납부기일	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년 월 일까지
부천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
제 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부 천 시 장(인)

(별지 제6호서식)

과태료부과취소(변경)통지서

제 호

시설(업소)명 :

주 소 :

성 명 : 귀하

과태료 납부 통지번호	고 지 금 액	취 소 (변 경) 액	차 액	비 고

위소(변경)사유 :

년 월 일

부 천 시 장 (인)

(별지 제7호 서식)

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

신청인	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
과태료 처분내역	부과기관	납부통지서 번호	
	고지받은 일자	과태료금액	
	과태료 처분사유		
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			
<p>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천 시 장 귀하</p>			

(별지 제8호서식)

제 호				
수 신	지방법원장			
제 목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			
1.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·제35조 및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제8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.				
2.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.				
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	성 명	(한자)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과 태 료 처 분 및 불 복 내 역	과 태 료 납 부 통 지 일 자		과태료 금액	
	부 과 관 청		이의제기일자	
	과태료에 처한 사유			
	본인의 불복 사유			
첨 부 : 1)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)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				
부 천 시 장 (인)				

